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
----------	-----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공무원 기능인력 재배치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감축·조정을 위해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합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재	785	400	15	196	22	152
조 정	782	399	17	194	21	151
증/감	△3	△1	+2	△2	△1	△1

나.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지도
현행	785	1	4	36	174	216	199	124	5	26
조정	782	1	4	36	179	216	200	115	5	26
변동	△3	-	-	-	+5	-	+1	△9	-	-

※ 정원없는 현원 감축 3명

다. 직렬별 조정 현황(안 별표)

구 분	정 원			조정내역	비고
	현재	증감	조정		
총 계	785	-3	782		
본청(소계)	400	-1	399		
기획실	24	-	24	· 변동없음	
정책담당관	10	-	10	· 변동없음	
행정과	31	-	31	· 변동없음	
올림픽체육과	24	-	24	· 변동없음	
복지정책과	20	-	20	· 변동없음	
가족복지과	18	-	18	· 변동없음	
민원토지과	25	-	25	· 변동없음	
세정과	23	-	23	· 변동없음	
회계과	22	-	22	· 전기운영9급△1 → 전기운영6급+1	직급조정 (정원상계)
인재육성과	22	-	22	· 위생7급△1 → 위생6급+1	직급조정 (정원상계)
관광문화과	28	-	28	· 전기운영9급△1 → 전기운영6급+1	직급조정 (정원상계)
허가과	21	-	21	· 변동없음	
경제과	18	-	18	· 변동없음	
환경과	21	-1	20	· (감 1) 기계운영9급△1	현원없는 정원 감축
산림과	20	-	20	· 변동없음	
안전교통과	21	-	21	· 변동없음	
건설과	30	-	30	· 변동없음	
도시과	21	-	21	· 변동없음	
직속기관(소계)	196	-2	194		
보건의료원	106	-2	104	· (감 2) 간호조무9급△1, 열관리운영9급△1	현원없는 정원 감축
농업기술센터	90	-	90	· 기계운영9급△1 → 기계운영6급+1	직급조정 (정원상계)
사업소(소계)	22	-1	21		
상하수도사업소	22	-1	21	· 기계운영9급△1 → 기계운영6급+1 · (감 1) 시설관리9급△1	직급조정 (정원상계) 현원없는 정원 감축

구 분	정 원			조정내역	비고
	현재	증감	조정		
의회(소계)	15	+2	17		
평창군 의회	15	+2	17	· (증 2) 행정7급 +1, 행정8급+1 · 시설관리9급△1 → 시설관리7급+1	인력재배치 직급조정 (정원상계)
읍면(소계)	152	-1	151		
평창읍	23	-	23	· 시설관리7급△1, 행정·세무·농업7급+1	인력재배치
미탄면	16	-	16	· 변동없음	
방림면	16	-	16	· 변동없음	
대화면	18	-	18	· 변동없음	
봉평면	19	-	19	· 변동없음	
용평면	16	-	16	· 변동없음	
진부면	23	-	23	· 변동없음	
대관령면	19	-1	18	· (감 1) 행정·세무·농업7급 △1	정원감축
출장소	2	-	2	· 변동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04. 26. ~ 2023. 05. 16.) : 의견 1건(붙임)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25조와”로,
“평창군”을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5명”을 “7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71명”을 “76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u>평창군</u>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u>평창군</u>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85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71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4명</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25조와 --- ----- ----- <u>평창군 및 평창군의회</u>----- ----- ---.</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82명</u>----- -----.</p> <p>1. ----- <u>765명</u></p> <p>2. ----- <u>17명</u></p>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5%이내	24%이내	30%이내	27%이내	12%이상	1%이내

-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6% 이내	94% 이상

-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82	78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50	750				
4급	4	3		1		
4~5급						
5급	36	18	2	7	1	8
6급 이하	710	710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1			1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입 법 예 고 결 과

제출기관	제출의견	비고
· 평창군의회	· 의회사무과 정원 2명 증원(15명 ⇨ 17명)	반영
	· 행정7급 정원 증원(3명 ⇨ 5명)	일부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정책지원관 증원 인력에 대한 직급은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210